#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7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4.

발 의 자: 강훈식·김병기·김남근

강준현 • 문진석 • 김교흥

김승원 • 박상혁 • 윤준병

김한규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,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 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벌에 처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 음.

그러나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자의 피해에 보전(保全)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,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8까지 신설).

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6879호)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편에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제442조의3(투자자보호기금의 설치 등) ① 정부는 공시위반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 자자보호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- 1. 정부출연금
- 2. 기금의 운용수익금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- ③ 정부는 제2항제1호의 정부출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.
- 1. 다음 각 목에 따른 과징금의 직전회계연도 징수액의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
  - 가. 제4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징금
  - 나. 제429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과징금
- 2. 제447조의2 및 「형사소송법」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직전

회계연도 몰수·추징액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

-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- 1. 제44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
- 2. 기금의 조성 ·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- ⑤ 금융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 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지원한 기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- 제442조의4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관리·운용한다.
  - ②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  - ③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(이하 이 조에서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④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42조의5(기금의 지원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1. 제429조 또는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자의 위법행위 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투자자
  - 2. 제447조의2에 따라 몰수 · 추징이 과해진 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

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투자자에 대한 지원. 다만, 제1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.

-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원을 하려는 경우 분배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442조의6(기금의 회계연도)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442조의7(기금의 회계기관)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, 기금재무관, 기금지출관,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.
- 제442조의8(이익 및 결손의 처리)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.
  -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/u>	제442조의3(투자자보호기금의 설치 등) ① 정부는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보호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정부출연금 2. 기금의 운용수익금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정부는 제2항제1호의 정부출연금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. 1. 다음 각 목에 따른 과징금의 직선회계연도 징수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가. 제429조제1항부터 제4항가지에 따른 과징금나. 제429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과징금

- 2. 제447조의2 및 「형사소송 법」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 행된 직전회계연도 몰수·추 징액에 100분의 6 이상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 율을 곱한 금액
- <u>④</u>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로 사용한다.
- 1. 제44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
- 2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- ⑤ 금융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
제442조의4(기금의 관리・운용)

- 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관리 운용한다.
- ②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회계 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.
- ③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회에 투자자보호기금운용심의 회(이하 이 조에서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④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제442조의5(기금의 지원) ① 기금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지 원을 할 수 있다.

- 1. 제429조 또는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 은 사실이 입증된 투자자
- 2. 제447조의2에 따라 몰수·추 징이 과해진 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투자자에 대한 지원. 다만, 제1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.
-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투자 자에게 지원을 하려는 경우 분 배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42조의6(기금의 회계연도) 기

	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
	연도에 따른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442조의7(기금의 회계기관) 금
	용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중에
	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
	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,
	기금재무관, 기금지출관, 기금
	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442조의8(이익 및 결손의 처리)
	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
	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
	<u>야 한다.</u>
	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
	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
	금으로 보전한다.